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18
----------	-------

발의연월일 : 2026. 06. 08.

발 의 자 : 박정훈 · 김위상 · 김소희  
고동진 · 김형동 · 조은희  
박덕흠 · 이성권 · 정연욱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u>&lt;신설&gt;</u></p>	<p>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            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            른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의무휴업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